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43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전진숙·김선민·이기헌

김 윤・김원이・김남희

김정호 • 권칠승 • 김윤덕

윤후덕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잎, 줄기, 뿌리 등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을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니코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u> 을	1 <u>잎</u> , 줄기, 뿌리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	등 연초(煙草)나 니코틴
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	
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u> 과 담배	<u>잎</u> , 줄기, 뿌리 등
는 몰수한다.	연초나 니코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